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대면진료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등 금지〉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29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0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6. 17.
- (3)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하여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할 수 없는 행위에 ‘의약품 판매 또는 판촉영업 행위, 의약품도매상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제1항 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 ⑤ (생략)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u> 7. <u>의약품 도매상(「약사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도매상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 또는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u> ② ~ ⑤ (현행과 같음)
시행일: 2026년 12월 24일	

2. 검토의견

- 2026.12.24. 시행예정 법률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를 신설하여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면서, 제34조의9제1항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¹⁾

1) 「의료법」 [시행 2026. 12. 24.] [법률 제21238호]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을 처방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⑦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 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의 범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제4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대면진료의 한계

2.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3. 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

⑥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

2.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을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⑦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제34조의2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의약품 처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 제2항에 따른 제출의 방법·절차 및 내용, 제4항 본문에 따라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종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종류 및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보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된 처방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5.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②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

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이하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권고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의 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하여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진료의 실시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자(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라 한다)가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요건·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및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인증 재신청 기준,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필요한 조사의 범위·방법, 제8항에 따른 조사의 기준·방법·절차, 제9항에 따른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 중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5. 환자,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비대면진료”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하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진료의 실시 등을 위한 인터넷매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제공·운영하는 자를 말함.

< 「의료법」 [법률 제21238호] 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금지행위 >

1.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5. 환자,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금지사항에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체계상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및 개정 「약사법」과 시행예정 「의료법」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외에는 의약품의 판매가 이미 금지되어 있음.
- 2026.12.24. 시행예정 「의료법」 제34조의9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금지사항으로 처방전을 가진 자의 소개·알선·유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추구 금지 및 처방전을 가진 자에 대한 약국·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추천 또는 선택유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2026.8.20. 본회의에서 가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6조제5호를 신설하여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금지하였고, 제47조제8항을 신설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특수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등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판촉영업 금지와,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개정안에 적극 공감함.
- ☐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214609)”의 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의료법 상 동일한 규정은 중복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법제처 (신중검토)

- ☐ 개별법을 통해 특정 주체의 의약품 판매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 행위 금지규정을 두기보다, 약사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함.
- ☐ 특수한 관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약사법상 특수관계의 개념·범위가 상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중소벤처기업부 (신중검토)

- ☐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내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금지는

의약품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넘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와 판촉영업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에 의약품 등을 추천·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중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4) 대한의사협회 (찬성)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판매·판촉에 직접 개입하거나 특정 도매상과 결탁할 경우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의 독립적·임상적 판단에 기초한 처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 또한, 동 개정안을 통해 환자안전 및 의약품 오남용 유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대한치과의사협회 (찬성)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유통·판촉에 개입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영리화를 가속화 할 개연성이 있으며, 치과의원의 플랫폼 종속 현상 방지를 위해 해당 개정안에 찬성함.
- 다만, 의약품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기기 및 치과 기공물 중개·알선 행위 금지를 명시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음.

6) 대한약사회 (찬성)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중개적 지위에 머물러야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하거나 의약품 유통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될 것이며,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약국의 의약품 구매 및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해당 개정안에 찬성함.

7)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반대)

- 개정안의 취지가 의약품의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나 적법한 의약품 판매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전면 금지하고 있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와 판촉영업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중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또한 특수한 관계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